인천도시계획결정(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:만수동)심사보고

1991. 11. 28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1. 11. 14

나. 제 안 자 : 인천직할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1. 11. 19

라. 상정일자 : 1991. 11. 25(제1차 위원회)

- ○ 제안설명 : 도시국장 송영길
- ○ 검토보고 : 소관전문위원
- ○ 질의 및 토론
- ○ 의견 수렴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도시계획국장 송영길)

- ○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
- ○ 관계법규를 완화하여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상·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코저 함.

나. 주요골자

- ○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(도시계획 결정)
  - • 위 치 :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109번지 일원
  - • 면 적 : 53,036.00㎡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가. 보 고 자 : 전문위원 김중진

나. 주요요지

- ○ 본 지역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며
- ○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해당지역안의 토지, 건물소유자 2/3이상, 세입자 1/2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은 지역으로

○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하기 위한 지구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음.

5. 토론요지 (전의원)

○ 주거환경지구지정에 대해 이의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과 의견 같음.